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

함태성*

차 례

- I. 서론
- II.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과정상의 문제점과 동법(안)의 주요 내용
- III.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검토
- IV. 결어

I. 서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인간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등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 소비의 83%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상황인데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법적대응은 그 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후변화대책에 있어서 정부 부처간 각기 다른 목소리가

* 이 글은 2009.2.17. 한국환경회의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진단」 토론회에서 본인이 발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존재하여 관련정책의 조정이 쉽지 않았고, 산업계는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해 왔으며, 일반 국민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하여 종래와는 다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법적인 측면에서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미국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녹색'을 화두로 하여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입법절차상의 문제와 법안 내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반대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2009년 1월 15일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통상적인 20일 이상이 아닌 1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같은 달 28일 공청회 개최하였다. 이렇게 성급하게 입법절차가 진행된 것은 2월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측 일정 때문이었다.¹⁾ 그러나 입법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2009년 2월 16일 국무총리 이름으로 다시 3일간의 기간으로 다시 입법예고를 하였고,²⁾ 이후 2월 25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³⁾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동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산업계는 '기업경쟁력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반발하였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여 왔던 원자력산업 육성,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과 거리가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⁴⁾

1)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9.1.15, 7면.

2)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재공고, 2009.2.16.

3)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관련 보도자료, 2009.2.25. 이 자료에 의하면 동법안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이후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현재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하여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자세로 대응해가야 하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제정에 있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법(안)이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지속가능발전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좀더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을 통하여 녹색성장이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과정상의 문제점과 동법(안)의 주요 내용

1.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

(1) 입법예고의 주체 문제

2009.1.15. 동법(안)의 입법예고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입법예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 제41조는 행정청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⁵⁾ 동조에 의하

제 관련 규정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이외의 다른 거래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그 도입 시기도 국제협상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토록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였던 원자력 산업육성, 물관리 관련규정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5)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면 입법예고의 주체는 ‘행정청’이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서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청은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행정청은 공법상의 개별처분을 외부에 행하게 된다.⁶⁾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의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의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위원회만 행정청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각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개정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⁷⁾

반면, 대외적인 표시권이 없이 ‘심의권’만 갖고 있는 위원회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며, 녹색성장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녹색성장기본법(안) 제14조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안) 제15조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지만 대외적 표시권에 관한 내용은 없다.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행정청의 예로는 독립제 행정청으로 장관, 처장, 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 등이 있다. 합의회 행정청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배상심의회 등이 있다(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8, 9면).
- 7)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행정심판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행정심판법」 개정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것을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자문해주는 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대하여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서인지 정부는 2009.2.16. 국무총리 이름으로 동법안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하였다.

(2) 입법예고기간의 문제

2009.1.15. 동법(안)의 입법예고는 14일 동안 이루어졌고, 2009.2.16.의 재입법예고는 3일간 이루어졌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으로 한 것은 법령의 개정 등이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을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입법과정에서의 참여는 입법의 민주성 확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국민권익구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의사의 반영이라는 입법예고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뛰어넘을 정도의 아주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측의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의 시급성이다.⁸⁾ 이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따라서 동 규정상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대통령훈령에 의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의 문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는 2009년 1월 5일 발령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8)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 관련 참고자료 [Q&A], 6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행정규칙인 대통령훈령으로 되어있다. 정부측은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훈령에 법적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⁹⁾

그러나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를 행정규칙인 훈령에 두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법률유보란 국가의 행정은 법적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조직법에서도 적용된다. 즉, 행정기관의 성립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¹⁰⁾ 즉,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은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세금 등)을 지우게 하는바, 결국 행정조직의 문제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¹¹⁾

이와 같이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조직법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대통령상하의 자문기구 및 소속위원회는 대부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다.¹²⁾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행정규칙인 대통령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¹³⁾

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색성장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의 주요기능을 다 가져오고 이들 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⁴⁾ 또한 위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을 모두 총괄하고 있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훈령에 두고 있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문제라고 할 것이다.

9)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위의 자료, 6면

10) 박근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8, 26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59면

11)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8, 8면; 정하중, 행정법 각론, 법문사, 2005, 5면.

12)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에너지위원회(에너지기본법), 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령), 미래기획위원회(대통령령),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령) 등.

13) 예컨대, 국가경쟁력강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등

14)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위의 자료, 5면

행정규칙인 훈령에 의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서 자신의 설립근거를 담은 법률(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예고하는 것은 법치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동법(안)은 모두 7장 6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녹색일자리,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정책, 원자력산업육성, 녹색국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 저탄소 교통체제구축, 녹색건축물, 친환경농림수산의 촉진, 생태관광의 촉진, 녹색생활, 교육·홍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등 정부의 모든 정책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1) 총 칙

동법(안) 제2조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동법(안)은 「에너지기본법」과 2008년 8월 입법예고되었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기초로 하여 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배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도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자원순환'의 개념에 대하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모두 9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다른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동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을 위한 규정들, 즉,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제11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제13조) 규정을 두고 있다.

(3) 녹색성장위원회

제14조 이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조직, 기능, 운영, 분과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안)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의 체계적·효율적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분야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이다(동조 제2항,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실의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되고,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동조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의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이 된다(동조 제5항).

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5조).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동법(안)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 경영, 기술, 산업, 세제 등에 관한 시책들을 두고 있는데,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제22조),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제23조), 자원순환의 촉진(제24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제25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제26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제27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제28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제29조), 조세 제도 운영(제3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제31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제32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제33조),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제34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제35조), 규제의 선진화(제36조), 국제규범 대응(제3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저탄소 사회의 구현

동법(안)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두고 있고(제38조, 제39조), 법정계획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제40조)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제41조)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규정(제46조)을 두고 있는데, 현재 산업계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으로 비추어 볼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법률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제42조),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제4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제44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제 구축(제45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제47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제48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시책의 하나로 원자력산업 육성(제49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반론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동법(안)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제50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1조), 녹색국토의 관리(제52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제53조), 저탄소 교통체제의 구축(제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제56조), 생태관광의 촉진 등(제57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제58조),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제59조), 녹색생활 실천 교육·홍보(제6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기타

그 외에 자료제출 등의 요구(제61조), 국제협력의 증진(제62조), 국회보고(제63조),

국가보고서의 작성(제64조), 과태료 규정(제65조)을 두고 있다.

또한 부칙에서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을 축소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명변경하고,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며,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존의 대통령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Ⅲ.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검토

1. '녹색성장'의 등장배경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상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사회 전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거론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같이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온 개념도 아니다.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가 2005년 서울에서 주최한 제5차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장관회의(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에서 사용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¹⁵⁾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저개발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15) 김은경,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홈페이지, 쟁점과 대안<4호> http://www.futurekorea.org/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0

가를 중점적으로 논하였는데, 서구 선진국들의 산업화과정처럼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통합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아태지역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의 산업화가 아니라 경제성장단계에서부터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녹색성장은 이와 같은 이 지역의 독자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⁶⁾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¹⁷⁾, UN ESCAP 주도의 녹색성장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저개발국가에 적용하는 환경전략이 아니라, 에너지·환경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은 제2조 제2호에서 녹색성장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녹색성장이라 함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의 진화 과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개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속가능발전(ESSD)은 새로운 국제질서로는 물론 각국의 환경정책 이념으로 정립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 4월 발표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등장한 이래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정립되었고, 그 후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에서 핵심테마가 되었다. 리우선언 10년 뒤인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16) UN ESCAP. Green Growth at a Glance: The way forward for Asia and the Pacific, 2006, p9.

17) 지식경제부,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2008, 17면.

는 리우회의에 따른 각종 실행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적 내용들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향후 발전방안을 담은 ‘WSSD이행계획’과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¹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¹⁹⁾ 오늘날에는 이 양자에다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3자의 통합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⁰⁾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제한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발과 환경보전, 그리고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조화와 달성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²¹⁾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2호에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지속가능발전’

2009년 1월 15일과 2009년 2월 16일에 입법예고된 법안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

18) 여기서의 이행계획은 환경·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향후 10~20년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까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 OECD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상호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정책을 가격 매커니즘의 조절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성장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예컨대, 경제적 수단(예. 쓰레기 종량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개발권 거래제도 등)을 활용하거나 조세에 환경오염비용을 반영하는 환경세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 보통 3E는 경제(Economy), 환경 또는 생태(Environment or Ecology), 형평성(Equity)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국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형평성의 3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21) 박균성·함태성, 환경법(제3판), 박영사, 2008, 60면.

22) 여기서의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1호).

본법 제2조상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조합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즉,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균형이라는 좁은 의미로 축소시켜 놓고 있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만 파악하고 있었고, 사회적 형평성(Equity)에 관한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오랫동안 전지구적 논의를 통하여 진화되고 있는 개념인 지속가능 발전을 20년 전의 개념으로 돌려놓았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축소·왜곡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뿐만 아니라 형평성, 통합의 내용도 포함하는 한 차원 더 고양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9년 2월 25일의 정부안에서는 제2조 제8호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본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예컨대, 동법(안) 제9조 제2항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포함되는 사항의 하나로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또한 동법(안)은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²³⁾

23) 동법(안) 부칙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명변경하고,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며, 기존의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존의 대통령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4.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정립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나 정부의 법안관련 보도자료에는 왜 녹색성과 지속가능발전을 같이 정의하고 있는지, 양자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우리가 '녹색성장'을 국가의 중요한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녹색성과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문헌이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녹색성은 지속가능발전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비교²⁴⁾

구분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Growth
기구	UNCSD	UN ESCAP
태동	'Our Common Future'(1987)	UN 아태환경개발장관회의(2005.3)
대상	전 세계 국가	아태 지역 국가
배경	성장의 결과인 환경오염의 복구	성장단계에서 환경오염 방지
목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동시추구	빈곤극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동법(안)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은 제50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51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 이외 지속가능발전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고 실천해가는 규정은 없다.

입법자는 지속가능발전을 어떠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안)이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두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기능을 축소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에서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에 포함되는 사항의 하나로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는 바, 이는 입법자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의 하나로 지속가능발전을 인식하고 있다는

24) 지식경제부,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2008, 17면.

것을 의미한다.²⁵⁾ 비록 정의규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본다고 하고 있지만, 법안의 다른 개별 규정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녹색성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보다 우위에 있는 성장방식으로서 녹색성장을 파악하고 있다.²⁶⁾

그러나 경제와 환경의 조화만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경제와 환경과 사회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우위에 두는 관계설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서로 충돌되거나 대립하는 개념이 아님을 분명하다.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축소하거나 변형시킬 필요도 없다.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존재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을 녹색경제·녹색경영·녹색기술·녹색산업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국가적인 실천적 대응전략이라고 한다면, 지속가능발전은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지도원리로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향해 가야 하는 이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녹색성장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환경배려에 관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법(안) 제50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²⁷⁾에는

25) 한편, 동법(안) 제22조 제1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녹색경제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안)의 입법자는 양자의 개념과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이러한 의도는 2009.1.15, 2009.2.16. 입법예고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녹색성장의 개념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끼워 맞추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보다 좁은 의미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축소·변경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게 되자 2009.2.25. 정부안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조항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27) 동법(안) 제50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 사회적 형평의 고려,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 전략의 하나가 아니라 녹색성장의 방향을 설정하는 개념으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5. '녹색성장'의 법적 개념 재정립

'녹색(Green)'은 환경의 질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좋은 상태로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은 환경의 질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좋은 상태로 고양시키는 성장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2조 제2호의 '녹색성장'의 개념은 조문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 '기후변화와 환경훼손 저감',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용어로 상징되고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녹색성장은 여전히 성장지향적인 것이고 환경은 성장을 위한 도구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은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이념이기도 하다. 우리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고, 해석론에 있어서도 입법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법(안)상의 녹색성장 개념은 현 규정상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의 내용도 같이 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법(안)의 개별규정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동법(안) 제35조 제1항은 정부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전략에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하며, 녹색성장의 개념에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²⁸⁾

따라서 동법(안) 제2조 제2호의 녹색성장의 개념은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을 통하여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형평이 고려되는 성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결 어

국가의 녹색성장 전략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방향과 내용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절차를 통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입법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동법(안) 제3조 제8호에서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28) 미국의 경우 2007년 12월에 녹색일자리법(Green Jobs Act)을 통과시켰는데, 그 결과 그린칼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금으로 1억 2,500만 달러가 승인되었고, 이 가운데 20%는 전역장교, 실직자, 위기청소년, 극빈층 가정을 위한 자금이었다(반 존스, 함규진·유영희 역, 「그린칼라 이코노미」, 페어퍼로드, 2009, 211면).

보다 넓고 광범위한 주체들과 진정한 파트너 쉽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의 입법예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색성장기본법의 성격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면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개별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개별 법률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법률을 무력화하는 법률이 아니다. 기본법은 각 분야의 개별 법률의 해석의 지침이 되고,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개별분야를 조정·통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이라면,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주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존재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실천적 대응전략이고,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정책의 지도원리이며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향해가야 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며, 동법(안)상의 녹색성장 개념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의 내용도 같이 담고 있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내용이 포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 전략의 하나가 아니라 녹색성장의 방향을 설정하는 개념으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이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동법(안)의 세부규정 중에서 원자력산업 육성(제49조) 규정은 녹색성장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대안의 하나로 원자력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원자력산업은 동법(안)에서 이야기하는 '녹색산업'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력산업은 결코 녹색산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법(안) 제49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재공고 자료, 2009.2.16
-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관련 보도자료, 2009.2.25
- 기획재정부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2009.1
- 김은경,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홈페이지, 쟁점과 대안<4호>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보도자료, 2009.1.28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관련 참고자료 [Q&A], 2009.1.14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9.1.15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8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8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8
-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한국환경회의의 주관 토론회자료집), 2009.2
- 정하중, 행정법 각론, 법문사, 2005
- 지식경제부,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2008.12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8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6
- Van Jones, 함규진·유영희 역, 「그린칼라 이코노미(The Green Collar Economy)」, 페어퍼로드, 2009
- UNEP,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2008.
- UN ESCAP. Green Growth at a Glance: The way forward for Asia and the Pacific, 2006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hn, Tae-Seong

In August 2008, President Lee Myung-bak presented ‘Low Carbon Green Growth’ vision for the next 60 years. President Lee said that ‘Low Carbon Green Growth’ would provide a strong source of growth once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improves. ‘MB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plan for green growth since the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outlined a plan to boost the country’s green industry, green technology and energy-saving. A key feature of the plan is the legislation of a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s provided law’s purpose, definitions, principle of Low Carbon Green Growth, obligation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 operator and nation, state strategy of Low Carbon Green Growth,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green industry, green technology, climatic change and energy strategy, etc.

But this act has been problems which include a legislative system, administrative procedures problems, defini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upbringing of nuclear energy industry, upbringing of four major rivers maintenance, etc.

First of all, we have to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act, Green Growth means ‘strategy of economic growth’ on Energy-saving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easures. Actually, early this year, MB government started a \$40-billion Green New Deal that includes a project to clean up and maintain the country’s four major

rivers. On the one h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pattern of resource use that aims to meet human needs while preserving the environment so that these needs can be met not only in the present, but in the indefinite future.

Green Growth is differentiated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does not focus solely on environmental issues. Sustainable development involves the simultaneous pursuit of economic prosperity, environmental quality and social equity. The United Nations 2005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refers to the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Green Growth has to understand as a new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includ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equity. For the green growth plan to be successful, public participation and support are essential. Now, we should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ubject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o find a desirable ima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주 제 어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일자리
Key Words “Low Carbon”,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reen Job